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조 례
 - 제1502호 :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제1503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4
 - 제1504호 :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7
 - 제1505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제1506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1
 - 제1507호 :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16
 - 제1508호 :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 제1509호 : 서울특별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23
 - 제1510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 제151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 제1512호 : 서울특별시 중구 학생 및 취약계층 아동 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 제151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 제1514호 :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37
- 고 시
 - 제2020-69호 : 동화동 공영주차장 설치 및 사용개시 고시 40
 - 제2020-70호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42
 - 제2020-71호 :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고시 43
- 공 고
 - 제2020-440호 :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위탁기관 모집 공고 44
 - 제2020-441호 : 중구회의 부의안건 공고 61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조 례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02호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출자한”을 “출연 또는 출자한 재단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1.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2.~4.(생략)</p>	<p>제2조(정의) 1.----- ----- <u>출연 또는 출자한 재단 및</u> -----. 2.~4.(현행과 같음)</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한 부조리나 부패행위 신고 시 대상을 소속 공무원이나 출연 또는 출자한 재단 및 지방공기업 직원으로 확대하여 부조리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조리나 부패행위 신고 대상 확대 조항 신설 (안 제2조제1호)
- “출자한”을 “출연 또는 출자한 재단 및”으로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03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중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구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피보험자는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다만,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보상금액의 산정) 피보험자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어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보험약관에 부합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0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서 제외되는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 구민을 지원할 제도적 장치로써 안전중구 실현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료 납입을 정함(안 제3조~ 안 제5조)
- 다. 보상금액의 산정을 정함(안 제6조)
- 라. 피해신고 및 조사,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안 제9조)
- 마. 보상제외 경우를 정함(안 제10조)
- 바. 시행규칙을 정함(안 제11조)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04호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를 “법령에 명시적으로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에 한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u>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u>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② ----- ----- ---- <u>법령에 명시적으로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에 한하여</u>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사회단체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단체 보조금 중 운영비의 경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단체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조문 개정(안 제4조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05호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 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 5. (생략) 6.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3조(적용대상) ----- ----- ----- -----</p> <p>1. ~ 5. (현행과 같음)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7. 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5·18 민주유공자의 숭고한 국가보훈정신을 계승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대상자를 지원하고자 함으로써 사회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대상자 확대 조항 신설 (안 제3조제6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신설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06호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구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 3. 주요 정책과제
- 4. 연도별 추진계획
- 5. 추진사업 목록
-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실시 등)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제8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구 본청, 소속 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 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 5.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이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 2.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 2.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건강증진) ①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노인 건강진단 사업
- 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
-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 4.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 5. 보건교육과 건강 상담
- 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 7.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 8.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별·연령·장애여부 등의 특성을 반영 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구청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표창)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구민 및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1조(모니터단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단 구성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2조(모니터단의 기능)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조사·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23조(실비변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가.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나. 고령친화도시 구성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함
(안 제6조~제7조)

다.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 및 평가를 하도록 함 (안 제8조)

라.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마.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권익보호,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건강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제16조)

바. 모니터단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1조~제23조)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07호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내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아동학대,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의 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점검
2. 아동·여성안전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지역 내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4. 폭력위기 및 피해 아동·여성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5. 그 밖에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등

제8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 중에서 위촉하고, 중구 아동·여성보호 관련 담당업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중구의회 의원 2명
2. 여성폭력 관련시설(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등)
3. 아동보호 관련기관(아동성폭력전담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4.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119등)
5. 교육기관(교육청, 각 급 학교 등)
6. 경찰·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7. 청소년상담지원시설(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8.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간강정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9. 학계전문가(대학교, 연구소 등)

④ 제3항 각 호의 기관 유형 중 5개 기관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이 중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연대는 사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아동·여성 안전 관련해 필요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역연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본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가. 아동·여성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간에 구성된 지역연대에 관한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고 아동·여성 안전시책의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목적·정의 및 책무 규정
(안 제1조~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규정 (안 제4조~안제5조)

다. 지역연대의 설치·기능·구성을 규정 (안 제5조~안8조)

라. 위원장의 직무 등 기타사항 및 시행규칙을 규정 (안 제9조~제16조)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08호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도시계획 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3조제2항 중 “부구청장이 되고”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기능)</p> <p>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자문 4.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에 대한 자문 	<p>제2조(기능)</p> <p>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도시계획 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p>제3조(구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생략) 	<p>제3조(구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과 같음) ② -----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 ③ (현행과 같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가. 도시계획 관련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조례를 현행화하여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내용 중 일부를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반영(안 제2조)

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는 내용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대로 규정(안 제3조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09호

서울특별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개·고양이 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유기·유실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누구든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중구의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함부로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책임)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문화 공간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유기·유실동물 임시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의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전담기구 설치)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전담기구나 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활동가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반려동물 실태조사와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연관된 동물 보호 단체 육성 및 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연구소·수의사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반려동물 문화조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가. 반려동물 관련 시장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으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나. 그러나 일부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과 생명존중 의식이 부족하여 학대나 유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육·관리되고 있어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또한 미흡한 실정임. 이에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대책을 수립·추진하여 구민들의 동물생명존중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기동물 보호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반려동물 소유자의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 제공, 부상 시 신속한 조치 및 동물학대 방지를 규정함(안 제5조)
- 나.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 (안 제6조)
- 다. 피학대동물의 신고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라.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규정함(안 제9조)
- 마. 관련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10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노인반”을 “어르신반”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정보화자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그 밖의 수수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5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② (생략) < 신 설 ></p>	<p>제15조(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7조(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①~③ (생략) ④구청장은 교육의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또는 인근에 있는 우수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노인반, 주부반, 청소년반 등 다양한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생략)</p>	<p>제27조(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어르신반,..... ⑤ (현행과 같음)</p>
<p>제38조(정보화자료 등의 제공)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p>	<p>제38조(정보화자료 등의 제공)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 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정보화자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p>
<p>1.~2. (생략) ② (생략) < 신 설 > < 신 설 ></p>	<p>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그 밖의 수수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화사업 추진시 사전협의를 대한 규칙 제정 근거를 마련(안 제15조제3항)

나. 노인반을 어르신반으로 변경하여 용어 순화(안 제27조제4항)

다. 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을 정함 (안 제38조제1항, 안 제38조제3항, 안 제38조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11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고발생”을 “사고”로, “구민 전체 또는 구민이 소유한”을 “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로 한다.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자전거 보험) 구청장은 자전거와 관련된 <u>사고 발생</u>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u>구민 전체 또는 구민이 소유한</u> 자전거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15조(자전거 보험) ① ----- ----- <u>사고</u>----- ----- <u>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u>-----.</p> <p>② <u>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자전거이용자 급증으로 자전거와 관련된 안전사고의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가입 조항을 기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세부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험 범위에 대한 조항 내용을 구체화(안 제15조 제1항)
- 나.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그 밖의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조항 신설 (안 제15조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학생 및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12호

서울특별시 중구 학생 및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학생 및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를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지역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학생 및 아동 구강보건사업 등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p> <p>①~③ (생략)</p> <p>④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u>,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⑤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7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u>연임할 수 있으며</u>, ----- -----.</p> <p>⑤ (현행과 같음)</p> <p>⑥<u>지역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학생 및 아동 구강보건사업 등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u>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구강보건사업 지역협의체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학생 및 취약아동 대상의 원활한 구강보건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회수 제한 삭제(안 제7조제4항)
- 나. 지역협의체 위원에게 원활한 참여를 위한 수당 지원(안 제7조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13호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조”를 “제1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p> <p>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 및 제45조와 「지역보건법」 <u>제9조</u>에 따른 노인보건사업, 사회복지시설 등의 방문 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무료진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p> <p>-----</p> <p><u>제11조</u>에-----</p> <p>-----</p> <p>-----</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여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보다 바람직한 의료지원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이 기존의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근거하여 규정된 조례를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근거한 조례로 개정사항 반영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14호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 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p> <p>제6조(수수료의 감면)</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 10. (생략)</p> <p>②삭제(1997.1.18.)</p> <p>③「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④「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p> <p>제6조(수수료의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인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u></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일부 수수료를 면제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여 주민 편의 증진 및 구정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조문 신설

-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5항 신설

: 무인민원창구 발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발급 수수료 면제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0-69호

동화동 공영주차장 설치 및 사용개시 고시

주차장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시행된 동화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완료되어「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주차장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차장 사용개시를 고시합니다.

2020. 6. 10.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주차장 사업개요 및 사용개시

주차장명	위 치	구 조	규 모			시행일 (예정)
			부지면적	연면적	주차면수	
동화동 공영주차장	중구 신당동 52-7 외5필지	철근콘크리트 (지하5층, 지상3층)	3,021㎡	12,200.57㎡	233면	2020.7.1.

※ 주차시설(지하2층~5층), 근린생활시설(지하2층 일부 ~ 지상3층)

나. 주차장 운영방법

- 급 지 : 노외3급지
- 운영기관 : 중구시설관리공단
- 운영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 운영방법 : 거주민우선 주차장으로 운영

○ 주차요금

(단위 : 원)

1회주차	월 정 기 권						비 고
	거주민			비거주민			
5분당	전일	주간	야간	전일	주간	야간	
150	<u>70,000</u>	50,000	20,000	140,000	100,000	40,000	노외3급지 주차요금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1항[별표1]

【비고】 제11호 주거지역 노외주차장의 경우 거주민에 한하여 주차장의 입자급지와 관계없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차요금 징수

※거주민우선 공영주차장 운영(13개소)

: 필동, 장충, 충현, 충현어린이, 성곽, 다산아트, 버티, 문화, 다산동, 새싹마을마당, 약수동, 동산, 손기정 체육공원

○ 적용대상 : 주민등록상 중구 거주민

○ 주차장 이용 대상자 선정

- 배정기준 : **동화동 공영주차장 월주차 이용자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은 신청자 중 배점점수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

※배점점수는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e-junggu.or.kr>) 거주자우선주차 배점표 참고

○ 근린생활시설(지하2층 일부~지상3층) 운영 : 교육지원센터 등

다. 문의처

○ 중구청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 (☎02-3396-6264)

○ 중구청 교육아동청소년과 교육혁신팀 (☎02-3396-4666)

○ 중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02-2280-8368)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70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지적도근점 번호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소재지
	X(m)	Y(m)	X(m)	Y(m)	
9821	551001.38	197715.05	450695.47	197644.21	남대문로5가 84-15
9822	550968.27	197755.13	450662.37	197684.28	남대문로5가 84-31
9823	550922.35	197807.26	450616.46	197736.40	남대문로5가 261-1
9824	550852.47	197842.75	450546.57	197771.89	남대문로5가 280
9825	550854.30	197819.19	450548.40	197748.34	남대문로5가 260
9826	550874.03	197748.58	450568.11	197677.74	남대문로5가 84-31
9827	550918.04	197664.12	450612.11	197593.30	남대문로5가 84-31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비고
설치일	2020.05.27.				
표지의 재질	황동				
측량성과 보관장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지관리과				
비고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0-71호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완료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61호(2011.12.1.)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5-90호(2015.11.19.)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6-8호(2016.1.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6-71호(2016.7.2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7-122호(2017.12.28.)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0-18호(2020.3.4.)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우리구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대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하고 공사완료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원 / 13,731.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피티에스지피에프비 (대표이사 유민근)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06, 8층(논현동, 아이캐슬빌딩)
4. 준공인가일 : 2020. 6. 8.
5. 준공인가 내역
 - 가. 토 지

시행면적(㎡)	대지면적(㎡)	정비기반시설(㎡)					비고
		합계	도로 (광로2-4)	도로 (소로1-)	도로 (소로1-)	공원	
13,731.6	8,351.8	5,379.8	299.3	1,671.7	1,832.6	1,576.2	

나. 건축시설

구 분	규 모	비 고
건축면적	4,890.06㎡	건폐율 : 58.55%
연 면 적	125,372.73㎡	용적률 : 999.93%
층 수	지하8층, 지상28층	높 이 : 124.38m
용 도	업무시설, 판매시설	

6.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시 의제 처리된 각 개별법에 정하여진 신고 또는 허가사항은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 본 사업 준공인가에 따라 준공검사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7. 관련도서 : 생략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75) 비치도서와 같음]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440호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위탁기관 모집 공고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서울특별시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라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운영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대상 기관을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시설 개요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공간구성	비 고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중구 을지로39길 40 (중구 구민회관 1층)	59.4㎡	사무실1실, 회의실1실	2020.7. 개관예정

2. 위탁사무 : 근로자의 권리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사업

- 가. 근로자의 근로여건 등 실태 파악
- 나.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
- 다. 근로 법률 상담 및 교육
- 라. 일자리 사업 안내 및 취업 지원 사업
- 마.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 개발
- 바.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4. 위탁금액 : 월 30,868천원

- 월 인건비 16,368천원, 월 운영비 및 사업비 14,500천원

※ 위탁금액은 2020년 서울시 지원 기준으로 매년 달라질 수 있음.

5.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노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 (1) 근로자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 (2) 노동 관련 단체나 노동 관련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단체)
- (3)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권리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공신력이 있는 법인(단체)

나. 신청 제외 대상

- (1) 「근로복지기본법」 제정목적 및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법인(단체)
-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부정수급 또는 지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3)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4) 공신력, 도덕성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 (5)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의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6.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0.06.10. ~ 2020.06.24. (14일간)

나. 접수기간 : 2020.06.18. ~ 2020.06.24. (5일간)

다.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별관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내 일자리경제팀
(☎ 02-3396-5683)

※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하며(제출 이후 서류 내용 변경 불가)

토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및 우편 접수 불가

※ 신청서 양식은 중구 홈페이지(www.junggu.seoul.kr)에서 다운로드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마감일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마.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1권으로 편철·제본하여 12부 제출하고,

파일자료는 담당자 이메일(brisk135@junggu.seoul.kr)로 제출

※ 1부는 신청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하되, 11부는 사본제출
용지크기(A4), 양면인쇄, 페이지수 기입, 견출지 부착

○ 수탁 신청서 및 서약서

○ 법인(단체) 현황

-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이력서
- 법인 인감증명서
- 수탁운영 사업계획서
- 기타 증빙자료

7. 수탁기관 선정심사

가. 심사위원회 개최 : 2020. 7. 3. (금) 15:00 (변동가능, 변동 시 별도 통보)

나. 심사 및 평가 방법

- 심사위원이 서류검토 및 제안설명(PT발표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후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하
되,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 점수를 부여
- 평가의 편중 방지를 위해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
여 최종점수 산정

다.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재정	재정 건전성	6	
사업실적	사업 수행 실적	9	
	지역사회 연계사업 실적	9	
운영능력	수탁사무 운영 능력	6	
	시설 관리·운영 계획	10	
	조직·인력 계획	10	
사업계획	프로그램 운영 계획	30	
	재정 운영 계획	10	
	지역사회 연계 계획	10	

※ 가점 사항(5점)

- 센터장 자격 기준 : 관련 전문자격증(변호사 · 노무사, 심리상담사 1급)
소지자 또는 관련 경력 3년 이상

8. 수탁기관 결정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구 분	결정방법
2개 법인(단체) 이상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점수를 비교하여 점수가 높은 법인(단체)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 - 동점일 경우, 사업계획 평가 점수가 높은 법인(단체)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 고, - 사업계획 평가도 동점일 경우 심사위원회 합의로 선정 ※ 평균점수 70점 이상 법인(단체)가 없을 경우 재공모 추진
1개 법인(단체) 단독 신청	위원들로부터 받은 최종 합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 때 위탁체로 결정 ※ 평균점수 70점 이하일 경우 재공모 추진

9. 위탁운영 조건

- 가.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함
- 나. 위탁받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는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시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함
- 다. 수탁 받거나 향후 취득한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정
기 보고하여야 함
- 라.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
야 함
- 마.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는 우리 구가 제시하는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
- 바. 중구에서 요구 시 위탁 협약내용에 대한 공증 및 수탁자 부담으로 협약내용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해야
함

10. 기타 유의사항

- 가.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나.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모집공고 등 관련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 모집에 임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법인(단체)에게 있음
- 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 도심산업과 일자리경제팀(02-3396-5683)**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표(안) 1부.
2. 수탁신청서 및 제출서류 서식 1부. 끝.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합 계			100
재정	재건 전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채 비율(부채/자기자본) 재정투명성(최근 3년간 자체 또는 외부감사 등) 	6
사업실적	사업수행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3년 이내 주요사업 수행 실적 	9
	연계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3년 이내 학교, 기관, 기업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사업 실적 	9
운영능력	수탁사무 운영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괄책임자 및 법인(단체) 직원의 자격증 및 경력사항 (신규채용 예정자 제외) 	6
	시설관리 운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운영 및 시설관리, 안전계획 : 적절성, 효율성 등 	10
	조직·인력 운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수행 인력·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10
사업계획	프로그램 운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의 합목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설립 목적과의 부합 여부 추진사업의 실행 가능성·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프로그램 충실도 추진사업의 차별성, 지역사회공헌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및 시설 특수성 반영, 특화 프로그램 운영 	30
	재정 운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운영 계획, 구성비,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10
	지역사회 연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학교, 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10

위 임 장

본인 (위임하는 자)		대리인 (위임받는 자)	
법인(단체) 대 표 자		성 명	
법인(단체) 등록번호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주 소	
연 락 처		연 락 처	
위 임 내 용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수탁 신청 촉탁			

2020. . .

법인(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인)

※ 법인은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날인, 단체는 직인 및 대표자 인감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붙임3] 제출서류 작성 안내

1. 규격 및 분량

- 작성 워드프로세서 (한글 2007 이상)
 - 본문 13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맑은고딕**
 -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0,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 10, 꼬리말 10
- 분량 : 총 50페이지 내외

2. 작성요령

- **첨부한 신청서 목차 및 양식을 참조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및 양식 변경 가능**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 시에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 절사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증빙자료는 관련 내용 뒤에 편재
-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목 차 -

I. 신청법인(단체) 현황

II. 법인(단체) 자산보유 현황 및 감사실적

III. 사업운영 실적 및 역량

IV. 시설 운영 계획

※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를 기재

[붙임4] 제출서류 작성서식

I. 신청 법인(단체) 현황

1. 현황

법인·단체 또는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 월일	전화 번호		
홈페이지				직원수			
자본금	자산	고정자산	천원		부채	천원	
		유동자산	천원				
설립목적							
주요사업							

2. 조직도 및 인력구성

조 직 도			
인력구성 및 현황			
직위	성명	현직	비고

II. 법인(단체) 자산 보유현황 및 감사 실적

1. 자산 보유현황

(단위 : 천원)

계	유동자산	고정자산	기 타

○ 유동자산(동산)현황

구 분	금 액(천원)	예치금융기관명	비 고
계			

※ 증빙자료(잔액증명서 등) 첨부

○ 고정자산(부동산) 현황

구 분	토 지(m ²)	건물(연면적 :m ²)	평가액(천원)	비 고
계				

※ 증빙자료(등기부등본 등) 첨부

2. 법인 부채현황

(단위 : 천원)

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 증빙자료 : 최근 3년간 법인대차대조표(재무제표확인원) 또는
신생법인의 경우 개시대차대조표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외부감사 등 실적

구 분		비 고
자체 감사		
외부 감사		
예산결산 공고		

※ 증빙자료 첨부

Ⅲ. 사업운영 실적 및 역량

1. 최근 3년 이내 주요사업 수행 실적

연도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주요내용 및 실적

※ 증빙자료 : 사업계획서(결과보고서), 계약서(협약서), 사업실적증명원, 비용지출증빙서, 활동사진 등 각 사업 수행별 증빙자료

2. 최근 3년 이내 학교, 기관, 기업체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실적

연도	활동명	운영일	협력단체 및 기관 명	인원	주요내용 및 실적

※ 증빙자료 : 사업계획서(결과보고서), 계약서(협약서), 사업실적증명원, 비용지출증빙서, 활동사진 등 각 사업 수행별 증빙자료

3. 총괄책임자(시설장 내정자)의 노동 관련 종사 경력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 문		최종학력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E-mail	

(2) 노동 관련 종사 및 참여 경력

연 도	사 업 명	발주기관명	비 고
~			
~			
~			
~			

※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

4. 총괄책임자 및 법인(단체) 소속 직원의 자격증 보유 현황

성명	생년월일	직위	보유자격증	비 고

※ 자격증 등 증빙자료 첨부

IV. 시설운영 계획

1. 기본방향

2. 주요사업계획(2020년)

- 1) 시설 관리·운영 계획
- 2) 조직·인력 계획
- 3)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

- 사업명, 목적, 대상 참가인원, 내용 진행과정, 예산 등 구체적으로 프로그램별로 따로따로 작성 (#별첨 1 참조)

3. 재정운영 계획(2020년)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산출내역(회, 명 × 원)	금액	비고
합 계				
	소 계			
	소 계			

4.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5.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

- 1)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 2)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 3) 재정 확충 방안 등

6. 기타 발전방향

#별첨1

프 로 그 램 명

※ 사업명, 목적, 대상 참가인원, 내용 진행과정, 예산 등 구체적으로 프로그램별로 작성

□ 목 적

□ 프로그램 개요(구체적으로 작성)

□ 추진계획

□ 사업효과

□ 기 타

- 연계사업 내용 등
- 학교, 기업, 지역사회연계 등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441호

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중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10.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

□ 부의안건 : 예산안 1건,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승인안 2건

구분	부의안건명	소관부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감사담당관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주차관리과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시민건강과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 제정안	보건위생과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서비스재단 행정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행정관리국
동의안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문화관광과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안	사회복지과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 피해감 및 자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환경과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환경과
승인안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	재무과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기획조정과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과